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년 3월 16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「세계화」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추어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현재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
- 「무한 경쟁시대」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.

주요개정골자

- "국제화추진위원회"의 조례제명을 "세계화추진위원회"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완비코자 함.
- 위원회 기능중 세계무역기구(WTO)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 연계과제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구성인원을 30인이내로 확대함

개정조례(안) : 불 임

개정(안) 대비표 : 불 임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과 제1조(목적)중 "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"를 "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제2호와 제5호 및 제8호중 "국제화"를 "세계화"로 하고
동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세계무역기구(WTO)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

제3조 제1항중 "20인이내"를 "30인이내"로 하고,
동 조 제3항중 "총괄반장"을 "담당계장"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"위원장이 위촉한다"를 "도지사가 위촉한다"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